

다국적 기업의 인권보호의무 강화방안*

Strengthening Measur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Human Rights Protection Obligations

정 성 숙**
Jeong, Seong-Suk

목 차

I. 서론	IV.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통한 간접적인
II. 다국적 기업의 개념과 국제법상 권리	인권의무
능력	V. 기업의 인권의무의 확대
III. 다국적 기업의 인권의무	VI. 결론

글로벌화된 경제 상황속에서 기업의 활동은 이제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기업의 인권 문제도 더 이상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국적 기업은 사람들에게 환경·사회·경제·정치·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권책임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은 적어도 인권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의 보호의무를 통한 간접적인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조차도 국경을 초월하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관련된 격차를 없애거나 줄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국제법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다국적 기업에게 법적으로 직접적인 인권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국가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인권의무의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인권의무의 확대가능성은 존재하는지 그리고 최근의 UN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이 작성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개정)초안의 검토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인지를 검토한다.

<https://doi.org/10.35148/ilsilr.2025..60.269>

투고일: 2025. 3. 30. / 심사완료일: 2025. 4. 23. / 게재확정일: 2025. 4. 27.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Law, Youngsan University

[주제어] 다국적 기업, 인권 의무, 국가의 보호 의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인권 남용, 인권 침해, 책임격차

I. 서론

글로벌화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은 국제적인 규모와 활동으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및 문화적으로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은 한편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국적 기업은 본국의 국경을 초월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사회적 수준을 고려하여 생산거점(입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국적 기업은 종종 사회적 수준이 낮은 곳에서 스스로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고, 현지 정부의 인권침해로부터 반사적 이익을 얻거나 투자를 통해 반인권적인 정부를 지지하기도 한다. 다국적 기업의 이러한 영향력과 행위는 인권보호를 촉진하거나 혹은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문제는 다국적 기업이 인권침해를 스스로 감행하거나 혹은 가담한 경우 국제법이 다국적 기업에게 인권(의무)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먼저 다국적 기업의 개념과 국제법상의 권리능력을 살펴보고, 현행 국제법 문서를 근거로 하여 사적인 행위자로서 다국적 기업이 인권(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인권(의무)가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어서 입법론적으로(*de lege ferenda*) 자주 논의되고 있는 인권(의무)를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과 인권을 둘러싼 논쟁속에서 현재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접근방식인 유엔인권위원회 전문가그룹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 (개정)초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이하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존중하며,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II. 다국적 기업의 개념과 국제법상 권리능력

1. 개념

미국의 리리엔탈(David E. Lilienthal)이 1960년 카네기 공대의 ‘1985년도의 경영과 기업’이라는 논문집에 기고한 ‘다국적기업의 경영’이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Multinational Corporation’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²⁾ 다국적 기업에 관하여 UN 인권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의 책임에 관한 규범’ 제20조에서 “다국적 기업이란 한 나라 이상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경제실체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경제실체의 집합체를 가리키며, 그것은 다양한 법적 형태를 가지며, 그들의 본국 또는 기업활동을 하는 수용국에 있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 또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은 “대체로 두 나라 이상에서 설립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상호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기타 실체들”을 말한다. 나아가 ‘ILO의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3자선언’ 제6조에서도 “공기업, 사기업, 공사 등 그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 밖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여타의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모든 기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⁴⁾ 이 이외에도 “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⁵⁾ 혹은 “여러 국가에 독립적인 판매 또는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해당 국가에 연구개발 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등⁶⁾ 다국적 기업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 획일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의 정의를 종합한다면 다음 세 가지의 특징 즉, 기업이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상호 구분되는 영업소를 두고 있고, 이러한

2) 류성진/김재원,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글로벌법제 현안 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30-31쪽.

3) 류성진/김재원, 위의 보고서, 32쪽.

4) 류성진/김재원, 위의 보고서, 32-33쪽.

5)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ransnationale Unternehmen, Problemverursacher und Lösungspartner?”, <<https://www.bpb.de/shop/zeitschriften/apuz/175496/transnationale-unternehme>>, 검색일: 2025. 3. 30.

6) Wirtschaftslexikon.co, “Transnationale Unternehmen”, <<http://www.wirtschaftslexikon.co/d/transnationale-unternehmen/transnationale-unternehmen.htm>>, 검색일: 2025. 3. 30.

영업소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며, 기업이 한 국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 ‘다국적 기업’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⁷⁾

2. 국제법상 권리능력

다국적 기업이 국제적인 인권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국제법상의 권리능력이다. 여기에서 국제법상의 권리능력은 각각의 국가법에 따른 기업의 권리능력과는 무관하다.⁸⁾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권리는 많은 국가간 투자보호조약에서 예를 들어 보상 없는 수용으로부터 외국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특별한 보호법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⁹⁾ 이러한 실체법상의 법적 지위와 더불어 현행 국제법은 투자보호체제하에서¹⁰⁾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규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조약에 기반을 둔 절차적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¹¹⁾ 이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국제관습법상 권리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¹²⁾

또한 1997년 ‘국제적 기업활동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의 매수 방지에 관한 OECD 협약’을 비롯한 일련의 다자조약은 비국가적 실체로서 법인이 국제범죄를 행할 수 있으며 국가들이 이를 규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³⁾ 또한 2000년의 ‘국제조직

7) Markus Krajewski, “Die Menschenrechtsbindung transnationaler Unternehmen”, *MenschenRechtsMagazin* Heft 1/2012, Universitätsverlag Potsdam, 2012, p. 66.

8) Peters, “Sind transnationale Unternehmen verpflichtet, internationale Menschenrechte zu respektieren und zu fördern?”, in: Peter G. Kirchschräger/Thomas Kirchschräger/Andréa Belliger/David J. Krieger, *Menschenrechte und Wirtschaft im Spannungsfeld zwischen Staaten und Nonstate Actors*, Stämpfli Verlag, 2006, S. 4.

9)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2009);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1993); Agreement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n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2003).

10) 예를 들어 ICSID-Regim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575 UNTS, 159 (1965), Art. 36;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1993), Article 1116.

11) 동 규칙 부칙 제6조, 동 규칙 제11장과 관련된 제20조 제2항으로부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에게 제소가능성이 허용된다.

12) Matthias Herdegen, *Völkerrecht 23. über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C.H.Beck, 2024, § 13 Rn. 2.

13) 정경수, “다국적기업의 인권의무 확립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 국제인권법의 수평적 효과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제2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220쪽.

범죄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은 국제 범죄집단의 참여, 돈세탁, 부패, 사법활동의 방해를 국제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들이 이러한 범죄에 저지른 법인에 대한 형사적·민사적·행정적 책임을 부과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점에 따라서 앞의 협정들에 근거한다면 다국적기업이 국제법상 의무부담능력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⁴⁾ 그렇다면 다국적기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권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다국적 기업의 인권의무

국제적인 인권의무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칙 제38조 제1항¹⁵⁾에 명시된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의해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조약이나 관습법에 따른 의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1. 조약에 따른 인권의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PWSKR)’ 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PBPR)’ 등과 같은 인권조약은 체결국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그렇다면 다국적 기업은 그와 같은 인권조약의 수범자가 아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조약에 따른 직접적인 인권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4) 정경수, 위의 논문, 220쪽.

15) 분쟁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칙을 정한 일반 또는 특정 국제조약, 법률로 인정된 일반 관행의 증거인 국제관습, 문명 국가가 인정하는 일반 법 원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의 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각국의 가장 자격을 갖춘 외교 전문가의 사법판결 및 사상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제사법재판소 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5)”,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14153&AST_SEQ=309>, 검색일: 2025. 3. 30.].

2. 국제관습법에 따른 인권 의무

2.1 국제기구의 문서

UN에서뿐만 아니라 OECD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인권 의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국제관습법의 현재 상태(status quo)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문서들은 기업의 국제적인 인권 의무를 부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 사무총장 특별대표였던 러기(John Ruggie)가 2011년에 집필한 이행 지침은 단지 기업의 책임만 규정하고 있었다.¹⁶⁾ 또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도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¹⁷⁾ 서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권고의 성질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¹⁸⁾ 나아가 2018년 7월 UN 인권위원회 위임하에 정부간 실무그룹이 발표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legally binding instruments)’ 초안도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⁹⁾

그러나 2003년 인권의 보호와 장려를 위한 UN분과위원회가 채택한 ‘인권을 존중하는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의 책임에 관한 규범’은 여전히 기업이 직접적으로 인권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범은 “다국적 기업은 가능한 한 국제법상 인정되는 인권을 장려하고, 존중하고,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함으로써 기업의 직접적인 인권 관련 의무와 더불어 소극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또한 적극적인 의무도 수반하는 광범위한 인권 의무를 규정하였다.²⁰⁾ 여기에 대해서 민간 부문과

16)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Annex,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A/HRC/17/31, II.: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17)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I. A. 2.: „Enterprises should respect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of those affected by their activities“.

18)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Preface, 1.: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recommendations addressed by governments to multinational enterprises“.

19) Human Rights Council, Elaboration of an Internationally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2014), A/HRC/RES/26/9; Human Rights Council,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Zero Draft: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2018).

20) Economic and Social Council,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많은 국가가 부정적인 비판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²¹⁾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이 기준을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는 반기업적 어젠다”로 언급하였다.²²⁾ 이러한 비판은 앞의 2003년 UN규범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기업의 직접적인 인권보호 의무가 채택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국제기구의 현재의 문서들은 다국적 기업의 인권의무가 국제관습법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2.2 국내의 법적 관행

국제적인 문서와 더불어 국내의 법적 관행(legal practice)은 관습법의 범주 내에서 국가관행(state practice)으로써 그리고 관습법의 성립요건인 국가의 법적 확신(opinio iuris)의 표출로써 원용될 수 있다.²³⁾

미국에서는 외국인불법행위법(Alien Tort Statute)에 따라 인권침해를 이유로 기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²⁴⁾ 동 법에 따른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미국의 국내법이지만, 동 법도 국제법상의 규범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²⁵⁾ 따라서 지방법원(District Courts)은 동 법에 따라 -국내법 위반을 포함하는- 국제법 위반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가진다.²⁶⁾ 미국 항소법원은 ‘Doe v. Unocal Corporation 사건’에서 동 법에 따라 버마국적자 4명이 제기한 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었다.²⁷⁾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회사 유노칼(Unocal)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소장에 따르면 인권침해는 유노칼이 진행하는 송유관 건설의 안전을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2003), E/CN.4/Sub.2/2003/12/Rev.2 : „Within their respective spheres of activity and influence,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have the obligation to promote, secure the fulfilment of, respect, ensure respect of and protect human rights recognized in international [...] law“.

21) David Kinley/Rachel Chambers, “The UN Human Rights Norms for Corporations: The Private Implications for Public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Law Review Vol. 6 Iss. 3*,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448.

22) US Government Statement, 20. 4. 2005; Kinley/Chambers, *Ibid.*, p. 448 참조.

23) Andreas von Arnould, *Völkerrecht 3. Aufl.*, C.F.Müller Verlag, 2016, S. 104.

24) Alien Tort Statute, 28 U.S. Code § 1350(외국인이 국제법이나 미합중국 조약을 위반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이 원래 관할권을 가진다).

25) Anja Seibert-Fohr/Rüdiger Wolfrum, “Die einzelstaatliche Durchsetzung völkerrechtlicher Mindeststandards gegenüber transnationalen Unternehmen”, *Archiv des Völkerrechts 43. Bd. No. 2*, Mohr Siebeck GmbH & Co. KG, 2005, p. 153, 154.

26) US Government Statement, 20. 4. 2005; Kinley/Chambers, *Ibid.* 참조.

27) US Court of Appeals, 9th Circuit, *Doe v. Unocal Corporation*, 27. 4. 2001, 248 F.3d 915.

책임지는 버마군인에 의해 저질러졌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다른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졌고, 그 소송의 범주 내에서 미국 법원은 기업이 국가의 인권침해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받아들였다.²⁸⁾ 그러나 거기에 반하여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Co.* 사건’과 ‘*Jesner v. Arab Bank*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러한 소송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었다. 거기에서 미국 대법원은 외국인불법행위법의 영토외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추정과 더불어²⁹⁾ “기업이 (인간) 대리인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아직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³⁰⁾고 판결하였다. 즉, 최근 미국 법원의 판례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기업의 의무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기업의 의무는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Cour d’appel de Versailles)도 기업이 직접적으로 국제적인 인권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³¹⁾ 동 법원은 ‘*AFPS et PLO v. Alstom et Veolia* 사건’에서 프랑스 기업이 불법적인 점거의 형태로 서안지구 철도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결하였다. 동 법원은 프랑스 기업은 외국영토의 점령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부인하였다.³²⁾ 그렇다면 프랑스의 법적 관행에 따르면 기업은 국제관습법으로부터 국제적인 인권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의 직접적인 인권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적 관행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2.3 강행법규(ius cogens-status)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국제관습법상 인권의무

부분적으로 다국적 기업은 비엔나협약 제53조의 의미에서 강행적인 국제법에 구속된다.³³⁾ 강행법규(Ius cogens)는 인권보장, 고문금지 및 노예제금지와 더불어 다국적

28) US Court of Appeals, 2nd Circuit, *Khulumani v. Barclay National Bank Ltd.*, 12. 10. 2007, 504 F.3d 254.

29) US Supreme Court,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Co.*, 17. 4. 2013, 133 S.Ct. 1659, 1664.

30) US Supreme Court, 2nd Circuit, *Jesner v. Arab Bank*, 24. 4. 2018, 138 S.Ct. 1386, 1402.

31) Noah Rubins/Gisèle Stephens-Chu, “Introductory Note to *AFPS and PLO v. Alstom and Veolia* (Versailles Ct. App.)”,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52 No. 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1157.

32) Cour d’appel de Versailles, *AFPS et PLO v. Alstom et Veolia*, Verdict 22. 3. 2013, p. 21.

33)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155 UNTS, 331;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Independent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Syrian Arab Republic (22. 2. 2012), A/HRC/19/69, Rn. 16. 구속력을 부인하는 판례로서 US Court of Appeals, 2nd Circuit,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Co.*,

기업에 중요한 규범들을 포함하고 있다.³⁴⁾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획일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국가관행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³⁵⁾ 이것은 특히 UN가이드라인원칙 혹은 OECD가이드라인과 같은 최근 몇 년 동안의 관련 국제법문서에서 강행법에 대한 구속력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3. 조약 또는 관습법상 직접적인 제3자적 효력의 부존재

예를 들어 로마조약이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조약이나 관습법의 직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통해 다국적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³⁶⁾ 그러나 현행 국제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³⁷⁾

4. 소결

다국적 기업은 조약, 관습법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법원에 의한 직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통해서도 국제적인 인권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강행법규(*ius cogens*)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다국적 기업이 인권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가.

IV.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통한 간접적인 인권의무

1.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국가는 -존중해야 하는 의무(*duty to respect*)로써 소극적인 의무인- 스스로 인권을

17. 9. 2010, 621 F.3d 111.

34) 강행법으로서 인권의 보장을 시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로서 ICJ, Corfu Channel Cas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v. People's Republic of Albania*), ICJ Reports 1949.

35) Marie Kuntz, *Conceptualising Transnational Corporate Groups for International Criminal Law*, Nomos, 2017, p. 214.

36)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187 UNTS, 3.

37) Peters, in: Christian Starck, *Recht und Willkür*, Mohr Siebeck, 2012, S. 91.

침해하지 않을 의무와 더불어 -보호해야 하는 의무(duty to protect)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보호의무인- 관할권 내의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³⁸⁾ 이러한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 duty)로 이해되며, 결과지향적 의무가 아니라 절차지향적 주의의무이다.³⁹⁾ 따라서 기업의 행위가 인권을 위태롭게 하거나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는 제3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또는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⁴⁰⁾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이행원칙’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가 기업의 활동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⁴¹⁾ 동 ‘원칙 3’은 인권을 보호해야만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²⁾ 또한 현행법이 기업의 인권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은 국가의 입법을 통해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의 형태

인권보호의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국가에게 일임되어 있다. OECD가이드라인이나 UN이행원칙 등의 국제문서는 이와 관련된 모델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권과 관련하여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의 법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17년에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국기업에게 인권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⁴³⁾ 스위스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률의 공포가 시민발의에 의해 요구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의 국외활동 및 인권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스위스 헌법에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⁴⁾

38)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2 (1);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 (2).

39) Human Rights Council, UN Guiding Principles, Principle 1, Kommentar: “The State duty to protect is a standard of conduct”.

40) Krajewski, *op. cit.*, p. 66, 70.

41) Human Rights Council, UN Guiding Principles, Principle 1.

42) Human Rights Council, UN Guiding Principles, Principle 3.

43) République Française, “Loi no. 2017-399,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https://www.legifrance.gouv.fr/eli/loi/2017/3/27/2017-399/jo/texte>>, 검색일: 2025. 3. 30.

44) Verfassungsblog on matters constitutional, Askin, “Konzernmacht und Verantwortung für Menschenrechte und Umwelt: Neue Wege in der Schweiz”, <<https://verfassungsblog.de/konzernmacht-und-verantwortung->

또한 유럽연합도 지침과 법령의 공포를 통하여 회원국이 인권보호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 예로서 유럽연합 의회는 지침에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⁴⁵⁾ 그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법령은 회원국들에게 특정 수입원자재공급망의 인권적합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⁴⁶⁾

확인이 가능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의 또 다른 형태는 투자보호협정상의 인권의무다.⁴⁷⁾ 고전적인 투자보호협정에서 인권의 존중은 전문에만 언급되었으며, 따라서 협정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규범을 해석할 때에만 시의성이 있었다.⁴⁸⁾ 그러나 일부이지만 새로운 투자보호협정의 경향은 인권을 투자자의 의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모델 양자간투자협정’에서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는 자국 그리고/혹은 투자유치국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를 관리하거나 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⁹⁾ 이와 유사한 조항들이 ‘모로코-나이지리아 양자간 투자협정’과 ‘범아프리카 투자법 초안’에도 포함되어 있다.⁵⁰⁾

3.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의 단점

이러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의 장점은 -그 의무의 근거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국가가 인권의무를 부담한다는데 있고, 지역적 혹은 국가간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fuer-menschenrechte-und-umwelt-neue-wege-in-der-schweiz/>, 검색일: 2025. 3. 30; Marc-Philippe Weller/Chris Thomale, “Menschenrechtsklagen gegen deutsche Unternehmen”,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 und Gesellschaftsrecht Vol. 46 Iss. 4*, De Gruyter, 2017, p. 510.

45) European Union, “Directive 2014/95/EU amending Directive 2013/34/EU”, <<https://eur-lex.europa.eu/eli/dir/2014/95/oj>>, 검색일: 2025. 3. 30.

46) European Union, “Regulation 2017/821 laying down supply chain due diligence obligations”, <<https://eur-lex.europa.eu/eli/reg/2017/821/oj>>, 검색일: 2025. 3. 30.

47) Kluwer Arbitration Blog, Biercliffe/Owczarek, “Human-rights-based Claims by States and ‘New-Generatio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http://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18/08/01/human-rights-based-claims-by-states-and-new-generation-international-investment-agreements/?print=pdf>>, 검색일: 2025. 3. 30.

48)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FTA States and the Republic of Lebanon: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 Human rights [...].

49)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Article 15 (1).

50) Reciprocal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Article 18 (2);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Draft Pan-African Investment Code, A/ECA/COE/35/18, Article 24.

점이다. 그러나 단순한 국가를 축으로 하는 접근방식의 단점은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국가 자체가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경우에 존재할 수 있다.

3.1 기업의 초국가성과 속지주의

기업의 초국가성으로 인하여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법상 기본원칙으로서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 고유의 영토에 한정된다.⁵¹⁾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활동을 규제할 의무가 없다.⁵²⁾ 그러나 이러한 영토상의 한계는 생산거점을 종종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다국적기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야기한다.⁵³⁾ 소재국(투자유치국) 내에서 종종 국가가 인권보호의무를 형성함에 있어서 흠결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흠결은 국가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사법부의 정치적인 의존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드러날 수 있다.⁵⁴⁾ 다국적 기업은 본국에 존재하는 법률을 우회하기 위해 이러한 보호흠결 혹은 보호격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의 소재지에 의존하지 않는 특성과 결합하여 ‘개발도상국이 저임금·저원가로 생산하여 해외에 덤핑하기(social dumping)’ 또는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이라는 메커니즘을 유발하거나,⁵⁵⁾ 사회적 기준이 높은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거점을 그 기준이 낮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게끔 하고, 소재국(투자유치국)은 낮은 사회적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외국의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입지로 남고자 노력하게 된다.

51)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Report, 58th Session, Annex 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2006, A/61/10, p. 519: “From a practical as well as legal perspective, the organs of a State generally perform legislative, judicial or enforcement functions only within the territory of a State”.

52) Human Rights Council, UN Guiding Principles, Principle 2, Commentar.

53) Peters, in: Kirchschläger/Kirchschläger/Belliger/Krieger, *op. cit.*, S. 127.

54) Weller/Thomale, *op. cit.*, 514 f.

55) Benjamin A. Evans, “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 An 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 An International Response to Bangladesh Labor Conditions”,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0 No. 2*, UNC school of law, 2015, p. 620.

3.2 기업의 인권침해에 국가의 연루

종종 국가가 기업의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소추 혹은 민사상의 청구권 관철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Co.* 사건⁵⁶⁾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존재했었다. 12명의 나이지리아 시민운동가에 대해 아바차(Sani Abacha) 독재 정권이 자행한 고문, 살해행위에 셸(Shell) 기업이 방조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 보고, 셸을 상대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업의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침해구제가 좌절되었었다.

또한 기업과 국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가 인권침해의 조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그 점에서 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지리적 이점의 유지를 위한 동기가 부여된다.⁵⁷⁾

4. 소결

기업의 유일한 인권보호의무는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형태는 인권보호의무의 단편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그 점에서 국가간 심각한 보호흡결 혹은 보호격차를 드러낸다.

V. 기업의 인권의무의 확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인권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호흡결 혹은 보호격차를 근거로 한다면 직접적으로 기업을 구속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한다.

56) Oyez,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https://www.oyez.org/cases/2011/10-1491>>, 검색일: 2025. 3. 30.

57) Jendrik Adam, *Die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im Völkerstrafrecht Band 26 1. Auflage*, Nomos, 2015, S. 246.

1.2 새로운 조약

반면에 새로운 조약의 체결은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그 원칙의 체계는 기업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기존의 조약이나 관습법의 역동적인 해석을 통하여 인권의무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조약은 기업을 명확히 직접적인 수범자로 다루고, 기업으로 하여금 보전 및 노동권과 같은 중요한 분야와 관련하여 정확한 요구사항과 최저 기준을 공식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조약을 통해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1.2.1 제3자를 위한 조약

다국적 기업에게 인권보호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당사자로서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⁶³⁾ 그와 같은 조약은 투자보호협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투자보호협정은 국가 간에 체결되지만, 기업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⁴⁾ 예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약상 근거로서 개인의 처벌가능성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한다.⁶⁵⁾

그러나 체결국은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약에 반대할 수도 있다. 체결국은 궁극적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기업들을 단지 간접적으로만 대표하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그 기업이 어느 국가에 속하게 될 것인지가 불분명하지만, 전통적인 투자보호체제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에게 권리만 주어지고 의무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⁶⁶⁾ 반면에 앞의 로마규정의 경우 각 국가가 개인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법상 제3자와 관련된 기존의 조약들과 달리 기업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약의 적법성의 결여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에 의해 인권침해가 흔히 발생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조약의 비준을 주저할 것이다.⁶⁷⁾ 게다가 비준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63) Peters, in: Kirchschläger/Kirchschläger/Belliger/Krieger, *op. cit.*, S. 129.

64)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Article 36.

65)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icle 25.

66) Peters, in: Kirchschläger/Kirchschläger/Belliger/Krieger, *op. cit.*, S. 129.

주장은 국가가 자신의 인권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새로운 투자보호체제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생산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난⁶⁸⁾ 나이지리아와 모로코와 같은 국가들은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⁶⁹⁾

1.2.2 조약당사자로서 기업

많은 이해당사자들 특히, 비정부기구들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인권보호의무를 부과하는 포괄적인 국제조약을 요구하였다.⁷⁰⁾ 또한 UN인권위원회 ‘인권과 관련된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활동에 관한 개방형 정부 간 실무그룹’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legally binding instrument)의 마련을 위한 토론 초안’에서 기업의 직접적인 인권보호의무를 고려하였다.⁷¹⁾ 그러나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인권보호의무를 부과하고자 했던 구상이 당시 토론 초안의 핵심적인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에 발표된 초안 및 2023년 7월에 발표된 ‘9차 개정 초안(이하, 개정 초안)’⁷²⁾에는 그러한 기업의 의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부 국가들이 8만 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과 그 보다 10배나 많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들이

67) *Ebd.*

68) Amnesty International, “Shell: Ein kriminelles Unternehmen?”, 28. 11. 2017, <<https://www.amnesty.ch/de/themen/wirtschaft-und-menschenrechte/fallbeispiele/nigeria/dok/2017/shell-ein-kriminelles-unternehmen>>, 검색일: 2025. 3. 30.; Western Sahara Resource Watch, “Bericht: Windige Geschäfte: Was Marokko und Siemens bei der COP 22-Klimakonferenz in Marrakesch verheimlichen wollen”, November 2016, S. 10, <https://www.medico.de/fileadmin/user_upload/media/westsahara-windige-geschaefte.pdf>, 검색일: 2025. 3. 30.

69) IV. 2. 참조.

70) Global Policy Forum, Treaty Alliance, “Enhance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o Protect Human Rights from Corporate Abuse”, 2015. 6. 2, <<https://www.globalpolicy.org/component/content/article/270-general/52770-new-call-for-an-international-legal-framework-on-business-and-human-rights.html>>, 검색일: 2025. 3. 30.

71)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n the second session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4. 1. 2017,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34/47>, 검색일: 2025. 3. 30.;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n the third session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24. 1. 2018,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37/67>, 검색일: 2025. 3. 30.

72) Human Rights Council,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Zero Draft: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hrbodies/hrcouncil/igwg-transcorp/session9/igwg-9th-updated-draft-lbi-clean.pdf>>, 검색일: 2025. 3. 30.

수범자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통제메커니즘과 교정메커니즘은 모두 과부하상태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⁷³⁾ 기업이 조약의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인권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2. 기업의 직접적인 인권보호의무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인권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다. 인권의무를 기업으로 확대하는 목적은 인권침해를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약이나 관습법을 통한 확대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론적으로 기업으로 인권보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넘어서는 더욱더 광범위한 인권보호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가 자신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권보호의무를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업과 국가 두 주체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권의무와 관련하여 기업을 국가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을 제정하거나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방적인 수권이라는 의미에서 기업이 주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은 실제로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진 강력한 행위자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기업의 인권의무를 정당화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을 국제법상의 주체로 분류하는 것 또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행위와 의견이 일반적인 관행과 의견이라는 의미에서 국제관습법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국제기구의 관행은 이미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달리 국제기구는 회원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위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관습법의 형성에 대한 그들의 참여가 정당화된다.⁷⁴⁾ 반면에 기업은 그러한 법을 형성하는 지위로서는 적법성이 결여된다.

73) De Schutter, "Towards a New Treaty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 Vol. 1 Iss.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 58.

74) Arnauld, *Ibid.*, S. 104.

3. UN인권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초안

이와 관련하여 UN인권위원회의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회원국 및 비회원국,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 그리고 각국 인권기구가 참여하는 ‘인권과 관련된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에 관한 개방형 정부 간 실무그룹’은 인권이사회가 2014년 6월 26일 제26/9 결의안을 통해 설립하였으며, 국제인권법에서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의 인권 관련 활동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마련하도록 위임받았다. 실무그룹은 2015년 첫 세션(Session)을 시작한 이래로 2024년 6월 26일 10번째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다음 세션은 2025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네바의 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실무그룹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제적인 인권의무와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확립하는 국제법상의 협약을 입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N이행원칙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초안에 관한 논의가 정부간 절차에서 진행되고, 또한 민간분야의 대표자들도 또한 참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초안을 거쳐 2023년 7월 업데이트된 UN인권위원회 실무그룹의 개정 초안⁷⁵⁾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협약의 자구와 규범내용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논의되었던 부분은 기업의 인권침해(human rights violations)였지만 동 초안에는 인권남용(human rights abuses)이 채택되었고,⁷⁶⁾ 단지 국가의 의무만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기업의 의무를 강조했었던 실무그룹의 과거의 고려사항을 벗어난 것이다.⁷⁷⁾

또한 동 초안 제9조는 기업의 본국 법원뿐만 아니라 또한 소재국(투자유치국)의 법원이 있을 법한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매우 광범위한 관할권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관련된 동 초안 제11조에서도 이어진다.

75) Human Rights Council,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Zero Draft: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2023).

76)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n the fourth session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2. 1. 2019, <<https://undocs.org/A/HRC/40/48>>, 검색일: 2025. 3. 30.

77) Human Rights Council, “Elements for the draft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2017. 3. 2,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WGTransCorp/Session3/LegallyBindingInstrumentTNCs_OBEs.pdf>, 검색일: 2025. 3. 30.

동조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의 법이 아니라 기업의 본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동 초안 제13조에 따라 본국으로부터 법적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인권침해의 피해자의 이러한 선택가능성은 법적 명확성을 흐리게 한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의 명확한 인권의무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업 자신이 어떤 관할권에 속하는지 그리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어떤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 초안의 또 다른 문제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전의 초안은 ‘다국적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 법원(法院)’이라는 의미에서 국제적인 차원의 법적 이행메커니즘을 다루었지만,⁷⁸⁾ 결국 이전의 초안 제15조와 동 초안 제16조에서는 전문가위원회의 설치만 채택되었다.⁷⁹⁾ 전문가 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하는 경우 국가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만 제시한다. 그렇지만 양자간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피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다시금 국가에 달려있다.

특히 초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법적으로 기업의 공개적인 보고를 규정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범화한 점이였다(초안 제9조 제2항 d). 공개적인 보고라는 도구는 자체는 국가, 공중 및 기업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협약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현행법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은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국가의 법적 의무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개정 초안에서는 이러한 보고의무가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초안 및 개정 초안은 국가의 보호의무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⁸⁰⁾ 일부 비판이 있었지만 실무그룹의 위원들은 이 초안을 장래의 문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그러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78) Human Rights Council, Zero Draft(2017), Article 9. b. (2).

79) Human Rights Council, Zero Draft(2023), Article. 15. 1.

80)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n the fourth session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2 . 1. 2019, <<https://undocs.org/A/HRC/40/48>>, 검색일: 2025. 3. 30.

VI. 결론

다국적 기업들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현재에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고,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거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기업의 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연성법, 본국 및 주재국(투자유치국)의 민형사적 제재, 그리고 국제인권법이 규제규범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행복이 국제법의 윤리적인 정당성이라는 전제하에서⁸¹⁾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법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국적 기업에게 인권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이다. 현행 국제법상의 인권조약들은 체약국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다국적 기업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업에게 직접적인 인권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다국적 기업은 국가의 보호의무와 그 의무의 국내법상의 형성을 통하여 단지 간접적으로만 구속될 뿐이다.

물론 국내법을 통한 간접적인 인권의무는 법적인 강제력이 결여되고 그 때문에 국가가 인권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지역간 혹은 국가간 보호격차를 메우지 못하고, 현재 초안 단계에 있는 UN인권이사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개정 초안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적 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논의와 문제점의 개선 및 업데이트를 통하여 기업의 국제적인 인권의무와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확립하는 국제법상의 협약을 이끌어냄으로써 인권의무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초안의 논의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의 확대와 강화를 담게 된다면 결국 이행원칙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UN이행원칙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선별하고 다듬어 법률적 의무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초안에서는 있었지만 개정초안에서 빠진 보고의무와 결합된다면 더 높은 실효성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1) Peters, “Der Mensch im Mittelpunkt des Völkerrechts: Kontextsensible Rechtswissenschaft vor der transnationalen Herausforderung”, in: Dieter Grimm/Alexandra Kemmerer/Christoph Möllers, *Rechtswege, Nomos*, 2015, S. 63.

참고문헌

1. 단행본

- Andreas von Arnould, *Völkerrecht 3. Aufl.*, C.F.Müller Verlag, 2016.
- Anne Peters, *Beyond Human Rights: Beyond Human Rights: The Legal Status of the Individual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Series Number 126)*,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Christian Starck, *Recht und Willkür*, Mohr Siebeck, 2012.
- Marie Kuntz, *Conceptualising Transnational Corporate Groups for International Criminal Law*, Nomos, 2017.
- Matthias Herdegen, *Völkerrecht 23. über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C.H.Beck, 2024.
- Peter G. Kirchschräger/Thomas Kirchschräger/Andréa Belliger/David J. Krieger, *Menschenrechte und Wirtschaft im Spannungsfeld zwischen Staaten und Nonstate Actors*, Stämpfli Verlag, 2006.

2. 학술지

- 정경수, “다국적기업의 인권의무 확립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 국제인권법의 수평적 효과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제2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211-242쪽.
- Anja Seibert-Fohr/Rüdiger Wolfrum, “Die einzelstaatliche Durchsetzung völkerrechtlicher Mindeststandards gegenüber transnationalen Unternehmen”, *Archiv des Völkerrechts* 43. Bd. No. 2, Mohr Siebeck GmbH & Co. KG, 2005, pp. 153-186.
- David Kinley/Rachel Chambers, “The UN Human Rights Norms for Corporation: The Private Implications for Public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Law Review* Vol. 6 Iss. 3,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447-497
- Marc-Philippe Weller/Chris Thomale, “Menschenrechtsklagen gegen deutsche Unternehmen”,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 und Gesellschaftsrecht* Vol. 46 Iss. 4, De Gruyter, 2017, pp. 509-526.
- Markus Krajewski, “Die Menschenrechtsbindung transnationaler Unternehmen”, *MenschenRechtsMagazin* Heft 1/2012, Universitätsverlag Potsdam, 2012, S. 66-80.

3. 연구보고서

류성진/김재원,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글로벌법제 현안 분석 연구, 한국법제
연구원, 2015.

[Abstract]

Strengthening Measur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Human Rights Protection Obligations

Jeong, Seong-Suk*

In the globalized economic situation, corporate activities now transcend national borders, and corporate human rights issues are no longer limited to domestic areas. While multinational corporations exert enormous influence on people in terms of the environment, society, economy, politics, and culture, they also face the corresponding issue of human rights responsibility. However, multinational corporations do not directly bear human rights obligations. They only bear indirect obligations through the state's duty of protection. However, even such obligations cannot eliminate or reduce the gaps related to human rights that arise from business activities that transcend national border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t is possible to legally demand direct human rights obligations from multinational corporations based on current international legal documents, what the problems are in indirect human rights obligations mediated by states,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ding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what method would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by examining the (revised) draft of a legally binding document recently prepar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working group.

[Key Words] Transnational corporation, responsibility gaps, legally binding instrument, human rights obligations, State protection obligations, Human rights abuse, human rights violations.

* Professor, Department of Law, Youngsan University